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출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

출연 예정액 : 60,000천원(도비 100%)

- 17개 시·도 출연금 총액: 1,008백만원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평가대상 공기업 수(50%)

※ 시·도별 공기업 수 구간 설정: 15개 시·도 1~4구간, 세종·제주 0.5구간

출연계획 (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16년			2017년 (D)	증감 (E=D-A)
	계(A=B+C)	당초(B)	추경(C)		
도비(100%)	60,000	0	60,000	60,000	0

5. 검토의견

가. 법적근거 및 심의사항

-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법적 근거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 계획안의 심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출연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¹⁾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내용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책연구,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이고,
- 2015년 7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정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2016년도 60,000천원 출연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연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지도·자문, 평가업무 지원사업, 정책 개발 및 세미나 지원, 정책연구지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 우리 충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대한 해석기준(행정자치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참고 1

17개 광역시·도 출연금 배분기준 ※ 행자부 통보 결과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8백만원** (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59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1~4구간)를 설정

- 구간금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0.5 (2구간 -40%)	세종, 제주	18
1 (2구간 -20%)	0.5이하 ~	24	1 (2구간 -20%)	1~15	24
2 (기준구간)	0.5~0.7이하	30	2 (기준구간)	16~25	30
3 (2구간 +20%)	0.7~0.9이하	36	3 (2구간 +20%)	26~35	36
4 (2구간 +40%)	0.9초과 ~	42	4 (2구간 +40%)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평균구간 5억/17기관) 기준으로 20%씩 차등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9, 공기업 수 평균 : 21.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16	2017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14	1,008	-6	11.402	-	516	359	-	492
서울특별시	78	78		1.021	4	42	30	3	36
부산광역시	60	60		0.78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0.694	2	30	7	1	24
인천광역시	60	60		0.853	3	36	14	1	24
광주광역시	54	54		0.672	2	30	7	1	24
대전광역시	54	54		0.668	2	30	6	1	24
울산광역시	66	66		0.913	4	42	7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0.713	0.5	18	2	0.5	18
경기도	84	84		0.939	4	42	95	4	42
강원도	60	60		0.320	1	24	28	3	36
충청북도	60	60		0.564	2	30	18	2	30
충청남도	66	66		0.592	2	30	29	3	36
전라북도	54	54		0.463	1	24	18	2	30
전라남도	54	54		0.456	1	24	18	2	30
경상북도	72	66	-6	0.556	2	30	35	3	36
경상남도	66	66		0.697	2	30	31	3	36
제주특별자치도	36	36		0.500	0.5	18	5	0.5	18

참고 2

2017년 시도별 출연금 예산 확보 현황

기 관 명	출연금 예산 반영(백만원)			비 고
	출연요청 금액	본예산 반영 금액	추경 확보 계획 여부	
합 계	1,008	948		
서울	78	78		
부산	60	60		
대구	54	54		
인천	60	60		
광주	54	54		
대전	54	54		
울산	66	66		
세종	36	36		
경기	84	84		
강원	60	60		
충북	60	-	여	
충남	66	66		
전북	54	54		
전남	54	54		
경북	66	66		
경남	66	66		
제주	36	3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를 추천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⑩ 생략